

[] 휴업
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[] 폐업 신고서
[] 재개업

※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신고자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	
	주소		
상호(명칭)			
소재지			
휴업·폐업·재개업 일시		휴업기간(휴업의 경우)	~
사유			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, 폐업,
 재개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자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증 원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참고 및 유의사항

※ 참고사항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(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합니다).